

의안번호	2204370
의 퇴 인	이언주의원
회 답 일	2024.11.11.
추 계 번호	24D0000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전투근무급여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적용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 적용 대상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투근무급여금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투근무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 (전투근무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제1항)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 방법과 전투근무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병급규제에 적용되지 아니함(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조 (전투근무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전투근무급여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적용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 적용 대상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투근무급여금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투근무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인건비·운영비 등의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 또한,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전투근무급여금이 지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제정안은 전투근무급여금을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투근무급여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 제정안에서 “전투근무급여금”은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1963년 5월 1일 법률 1338호에 따라 제정되어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군인보수법」 ”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구 「군인보수법」 제17조¹⁾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월남전 파병 군인은 전투근무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음²⁾

1)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법률 제1338호 [시행 1963. 5. 1.])

2) (법제처) 월남전 참전군인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에 근거한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 (2013. 1. 22.),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베트남

- 제정안은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종전 「군인보수법」 제16조(제16조 특별급여, 법률 제1338호, 시행 1963.5.1.)

각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별도의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³⁾을 제정 (대통령령 제1895호, 1964. 7. 28.)하여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정상적으로 집행⁴⁾하였기에 별도 미지급분은 없다는 입장임

- 또한, 제정안에 따른 전투근무급여금 추가 재정소요를 산정하기 위하여 월남전 참전군인 연도별·계급별 인원, 전투근무급여금의 산정 방법에 따른 월 지급액, 당시 원화 표시 연도별 환율, 현재가치 환산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으로, 국방

파병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청구권 미인정, (2015.10.22. 2015구합51392)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및 청구권 미인정

(헌법재판소) 월남전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위헌 확인 각하(2022. 3. 8.)

- 3)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령은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파병 요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 그 파견된 군인·군속에게 지급할 특수근무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액) 전조의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인·군속에게는 그 파견근무 기간 중 1일 근무에 대하여 별표에 규정된 금액을 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수당지급의 기간계산은 입지에 착임 한 날로부터 귀국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는 날 까지로 한다.

제4조~제6조(생 략)

【별표】 근무수당액표(1일 근무)

이병(0.6), 일병(0.8), 상병(1.0), 병장(1.2), 하사(1.5), 중사(2.0), 상사(2.5), 소위(4.0), 중위(4.5), 대위(5.0), 소령(5.5), 중령(6.5), 대령(7.0) / \$

- 4) (서울행정법원, '23.4.14. 2020구합59369) 월남전 참전군인의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정상 지급된 것이 인정('05년 군편소 조사결과, 원고 인정)되며,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발생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월남전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법제처의 해석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뿐 만 아니라, 수당의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되지 않음.

부 자료에 따른 월남전 참전군인의 수는 345,994명이고, 계급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⁵⁾

[표 1] 월남전 참전군인 계급별 현황: 1964~1972년

(단위: 명)

구분	장 교			부사관 (준위 이하)	병사	계
	장성	영관	위관			
군인 수	97	5,762	20,614	55,226	264,295	345,994

자료: 국방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그러나 제정안은 전투근무급여금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보상금의 산정 방법 및 현재가치 환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전투근무급여금을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5)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12.)에 따르면 324,864명이라고도 하나, 본 추계에서는 국방부가 2024년 7월 예산정책처 자료요구에 회신·제공한 ‘월남전 참전군인 계급별 현황:1964~1972년’ 자료를 적용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